고용노동부 | 보도참고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0.(화) 배포 즉시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공무직委 6개 분야별협의회 발족

-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야별 의제 논의 시작
-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11월 4째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직위원회 내 **6개 분야별협의회**의 **구성**을 **완료**(10월말)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9.18일 공무직위원회 출범 이후 **노동계**(양대 노총)·**정부**·**전문가**가 **함께 위원 구성 논의**를 **이어간 끝**에 **약 40일만**에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합의로 마무리**함으로써 **본격적인 의제 논의**가 **시작**되었다.

분야별협의회는 공공부문별로 나누어 **①중앙행정기관**·**②지방자치단체**·**③교육기관**·**④공공기관**·**⑤민간위탁**·**⑥자회사 등 6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관련 부처**에서 **간사부처**로 **참여**하는 등 **공무직 관련 정책 논의**에 **책임감**을 더했다.

〈 분야별협의회 간사부처 〉

분야	①중앙행정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교육기관	④공공기관 (재경부 · 행안부)		⑤민간위탁 (노동부)		⑥자회사
간사부처	노동부·인사처·기획처	행안부	교육부	중앙 소분과	지방 소분과	돌봄 소분과	생활폐기물 소분과	재경부
				재경부	행안부	복지부	기후부	

* **(공공기관 분야)**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을 다루는 중앙소분과 및 지방소분과를 각각 발족(완료)

* **(민간위탁 분야)** 광범위한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돌봄분야와 생활폐기물 분야를 다루는 돌봄소분과 및 생활폐기물소분과를 각각 운영할 예정

☞ **(분야별협의회 일정)** 제1차 회의(6개분야, 2소분과), 중앙행정(11.5), 지자체·자회사(11.11), 교육기관(11.13), 공공기관(11.18), 민간위탁(11.19), 중앙공공소분과(11.20), 지방공공소분과(11.24) 順

또한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각 분야의 **현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등 **광범위한 의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부문 내 공무직노동자(공무직+기간제)의 규모**는 **총 33.8만명**이며,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5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내 **발전협의회**(위원장 노동정책실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를 발표(11월 4주 예정)하는 등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 공무직노동자 등 규모 〉

- **(공무직) 공무직 노동자 총 23.2만명**, 공공부문 전반에 폭넓게 분포
 - ↳ 지방자치단체 6.2만명(26.8%), 공공기관 5.3만명(23.2%), 중앙행정기관 5.2만명(22.6%), 자회사 4.9만명(21.5%), 지방공기업 1.3만명(5.9%) 順
-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 총 10.6만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지자체 소속
 - ↳ 지방자치단체 5.9만명(56.5%), 공공기관 2.3만명(22.5%), 지방공기업 1.0만명(9.5%), 중앙행정기관 0.9만명(8.7%), 자회사 0.3만명(2.9%) 順

***(민간위탁) 민간위탁 종사자 약 19.5만명**〈2018. 12.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

특히, 공무직위원회의 **분야별 의제 논의를 객관적인 실태**를 기반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공무직등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공무직委 실무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차관)은 "전체 분야별협의회가 발족한 만큼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계·정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한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공무직위원회 추진 경과
2. 공무직위원회 개요
3. 공무직위원회 위원 명단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기획단	책임자	기획단장 직무대리	홍정우 (044-202-7702)
		담당자	사무관	이유석 (044-202-7665)
			사무관	안중현 (044-202-77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공무직위원회 추진 경과**

□ 공무직위원회 추진 경과

[준비 경과]

그간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2월** 법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노동계**, **전문가**, **관계부처**는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와 대화**를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체계, 논의구조, 시행령 등 **운영 기반을 함께 준비**해 왔다. **출범 준비 단계부터** 협의의 주체들이 **함께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공무직위원회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노무·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조정**하는 **법정·공식적 협의기구**로서, 노동 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무직위원회는 **1기 공무직위원회**('20.3~'23.3월 운영)보다 **한층 강화된 체계로 출발**한다. 1기 위원회가 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다면,

이번 공무직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로서 **더욱 안정적인 논의 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종사 부문·직종이 다양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다수의 기관·부처의 참여와 협의 과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책 대상도 공공부문의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되어 현장의 노동자를 더욱 폭넓게 아우르는 종합적 논의가 가능해졌다.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1기와 달리, **노동계**, **전문가**,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현장의 다양한 실태**와 **의견**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의 구조]

공무직위원회는 확대된 역할과 규모에 맞게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적인 논의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정책 계획**과 **논의된 결과**를 **최종 의결**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등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종사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의 논의를 총괄**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구성되는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각 분야의 현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붙임2 공무직위원회 개요

❖ **공무직위원회법 시행(9.18.)**에 따라, 노동계·전문가·정부가 함께 공공부문 공무직노동자등의 근로조건, 처우개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차원의 노·정협의 틀 공식화**

1 (입법 배경)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용역·위탁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의 처우개선, 차별해소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 틀 마련을 위해 「공무직위원회法」 제정(2.12. 국회통과), 9.18. 시행

2 공무직위원회법 주요 내용

○ **(기능)** 공무직등 **임금체계, 채용·인사관리, 노사관계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상설적·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

* (적용대상)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립·공립학교, 공공기관 등)의 공무직·기간제·파견근로자 및 도급·위탁사업주에 고용된 자

○ **(심의·조정사항)**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로조건, 인사관리 관련 정책** 등을 **심의·조정(법 제3조 제2항**에서 심의·조정사항을 규정)

3 공무직위원회 구조

공무직위원회	**기능: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정부,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 등 30인 이내 구성
실무위원회	**기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 위원장 노동부차관 / 정부, 안건관련기관, 노동계, 전문가 등 30인 이내 구성
발전협의회	**기능: 이해관계자, 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협의 분야별로 분절적 논의가 되지 않도록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중간과정 관리 역할 수행** ▸ 위원장 노동부실장 / 정부, 노동계, 전문가 등 20인 이내 구성
분야별협의회 (6개분야)	**기능: 분야별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논의의제 발굴, 안건 등 논의** ▸ 정부, 노동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 구성

①중앙행정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교육기관	④공공기관 (중앙 소분과 / 지방 소분과)	⑤민간위탁	⑥자회사

붙임3 **공무직위원회 위원 명단**

□ 공무직위원회 위원(30명)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1	정부	임기근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2		권창준	〈간사〉 고용노동부 차관
3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4		최은옥	교육부 차관
5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6		김영수	국무조정실 제1차장
7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8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
9	노동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10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1		정연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2		정정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3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14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15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16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17	사용자	김완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18		김천홍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시도(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19		이근희	한국환경공단협의회 의장
20		이원희	前)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21		정무경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22		한 훈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위원
23		황혜신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
24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도(인천시)의 부단체장(現 공석)
25	전문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26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27		이공희	단국대 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교수
28		이종욱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 교수
29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30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